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개정(2011. 2. 9)되어 국외숙박비 지급·정산에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국외숙박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마련(안 제5조 제1호)
  - 현 정액지급 ⇒ 신용카드 사용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
  - ※ 단, 카드사용이 어려운 국가는 현금을 선 지급 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

#### 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공무원 여비 중 국외숙박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마련.
  - 현 정액지급 ⇒ 신용카드 사용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개정(2011. 2. 9) 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